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85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1월 02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김경훈,
김길영, 남창진, 박성연,
박영한, 윤영희, 이봉준,
이은림, 최민규, 최진혁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이외에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방비인 상황에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옥외행사의 정의 및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 나.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옥외행사에 따른 시민의 안전확보를 도모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안전관리계획에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토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라.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마.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
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
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

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옥외행사 실시”를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략)</p> <p><신설></p> <p>2. (생략)</p> <p><신설></p> <p>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p> <p>1.·2.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u></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시민의 책무) <u>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적용범위)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u></p>

②·③ (생략)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생략)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생략)

<신설>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

당하는 행사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① -----
-----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
-----.

할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② (생
략)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
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자치구
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